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. 3. 17 선고 2015가단688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16. 3. 10.

판결 선고2016. 3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
나.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,
다. 3,68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6. 1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2014. 6. 12.까지의 미지급 지료청구 부분을 제외한다).
2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강진우

별지